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018090 판결 [구상금 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0180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6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C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D

변론 종결2018. 11. 8.

판결 선고2018. 11. 2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6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1) 원고 A에게 1,1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2018. 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1,6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2018. 2.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됨을 전제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예비적으로 주장사실의 일부만 인정됨을 전제로 전부청구로서 원고 A에 대하여 1,00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1,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 법원에서 위 주위적 청구를 각 확장하였다)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원고 A에게 2,0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위 금액을 주위적으로는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일부 청구로, 예비적으로는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 청구로 구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법원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을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관련 주장"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10억 원"을 "11억 원"으로, "15억 원"을 "16억 5,0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1행의 "43호증" 다음에 "제5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사건의 원고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177, 2015누188(병합)]에서 "2016. 1. 28.자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의 "M"을 "N"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부터 제13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시가감정결과와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감정인 N은 감정의 근거가 된 재무정보나 자료 등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시설 등의 가액을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대로 인정하여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재무정보 등이 정확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감정인 스스로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정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상속, 합병, 영업양도, 경매 및 이와 유사한 절차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므로(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골프장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봐야 함에도, 위 감정인은 입회보증금반환채무 170,000,000,000원이 부채에서 누락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시가감정을 하였고,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순자산가액이 124,917,149,127원으로 위 부채에 미달한다.

③ 이 사건 골프장은 경영권분쟁으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이용객수 및 영업이익률 등이 2014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골프장의 수익성은 높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는데, 위 감정인은 이러한 사정을 경영요인 등에 반영하여 감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반영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주식 취득가격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 주식의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한 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공매절차가 계속된 유찰로 매각에 이르지 못한 채 종결되었고, 이에 피고 C가 2014. 2. 18. 하나자산신탁과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및 토지를 약 24,8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및 토지의 가격은 위 매매가격과 비슷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공인회계사 ○은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및 토지의 가격이 위 매매가격임을 전제로 2015. 4. 15.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687원으로 평가하였다(딜로이트 회계법인의 2017. 9. 11.자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② 기준시점인 2015. 4. 15. 무렵 피고 C의 주식은 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실제 거래된 적이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및 전환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발행되었다.

③ 피고 C의 주식이 10,000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경영권의 양도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피고 C는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15,000원 또는 20,000원에 거래된 경우는 경영권양수가 결합된 때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C의 주식은 대부분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관한 원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의 배임죄책을 면하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피고 C의 주식이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경우는 대체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영이 2015. 4. 15.보다 더 어려웠던 과거의 거래사례인 점,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및 토지의 실제 가치는 여러 차례의 공매유찰 후에 성립한 매매에서의 매매가격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5. 4. 15.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이 앞서 본 6,687원보다 클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 D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소유의 주식을 1주당 7,500원에 매수하려는 의사도 있었으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여 근질권을 실행한다고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처분가격"이 1주당 10,000원이라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6행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를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옳지 않다"로 고친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옳지 않아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경환

판사김제욱

판사이정훈

1) 원고들은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고만 기재하고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원고들의 의사를 선택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정리한다(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청구부분 제외).